

# 1 개인 시민세

개인 시민세는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분이 후쿠오카시의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개개인의 부담 능력에 맞춰 함께 부담을 하기 위한 시(市)세입니다. 개인 시민세에는 넓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이 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현에는 개인 현민세가 있어 신고 및 납세 수속은 개인 시민세와 함께 후쿠오카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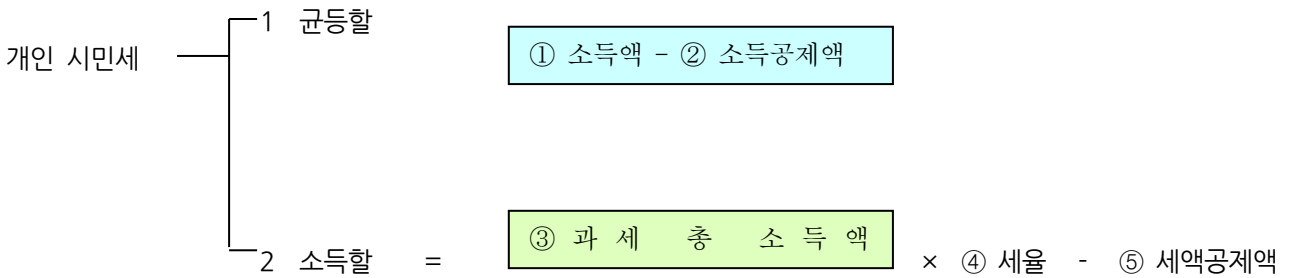
## (1) 개인 시민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외국인에 대해서도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개인 시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구 이외의 구에 사무소, 사업소, 집과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 지역구에서도 균등할이 단독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 (2) 계산방법

개인 시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 및 ①~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균등할

연간세액은 시민세 3,500 엔(그 외에 현민세 2,000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소득할

소득할은 ①소득액에서 ②소득공제액을 제한 ③과세 총소득액에 ④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① 소득액

소득액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수입액에 따라 급여소득공제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수입액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주형태와 그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4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이란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지출 여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납세자의 실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소득 금액에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과세 총소득액

과세 총소득액이란 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한 후, 천 엔 미만의 단위를 반내림한 금액입니다.

#### ④ 세율

소득할의 세율은 시민세 8%(현민세 2%)입니다.

#### ⑤ 세액공제액

배당소득이나 외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3) 개인 시민세 신고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해의 3월 15일까지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구청에 개인 시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분
- 전년도의 소득이 급여만으로 근무처에서 시청에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신 분
-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 전년도 소득이 43만 엔 이하인 분

### (4) 납기 및 납부방법

시민세 납부는 ①보통징수와 ②급여에서의 특별징수, ③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보통징수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를 퇴직하여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송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6월, 8월, 10월 및 이듬해 1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6 월	8 월	10 월	1 월

※ 납부기한은 월 말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잊지 않고 반드시 잔여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회사 종업원 등의 경우에는 급여지불자를 통하여 세액을 통지하고 급여지불자가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매달 급여에서 세액을 제하여 그 다음 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급여에서 제하도록 급여지불자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 ③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

연도의 첫날(4월 1일) 현재 노령기초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분으로 개인 시민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연금지급자가 공적 연금 지급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을 연금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소득 이외에 급여나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은 급여에서의 특별징수 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한 그 다음 해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국 후에 개인 시민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자세한 내용은 P8 을 참조)을 선임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구청 과세과에서 확인하십시오.



## (5)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주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형태는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비영주자와 영주자로 세분됩니다.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거주지'가 있는 분

(주)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는 없지만 일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영주자: 거주자 중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영주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분

● 거주형태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과 세 범 위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거주자	비영주자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국외에서 지불되는 금액 중에서 일본 국내로 송금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과세 (따라서 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 국외에 보유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주자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전액 과세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과세		비과세	

## (6) 조세조약에 대하여

일본과의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개인 시민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국정부 직원, 교수, 유학생 등의 경우, 개인 시민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소득세가 면제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시민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7) 일본 국외 거주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친족을 대상으로 부양공제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때 친족 관계서류(주 1) 및 송금 관계서류(주 2)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 1) 친족 관계서류 예시

- (1) 호적 부표 복사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 해당 친족의 여권 복사본
- (2)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해당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에 한함)

(주 2) 송금 관계서류 예시

- (1)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외환 거래에 의해 신고자가 해당 친족에게 송금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여 해당 친족이 상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 등의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